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21호 2015. 10. 6(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213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사천시 조례 제1214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121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216호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217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218호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219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220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사천시 조례 제1221호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222호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 20
- 사천시 조례 제1223호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지원에 관한 조례 ----- 26
- 사천시 조례 제1224호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사천시 조례 제1225호 사천시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31
- 사천시 조례 제1226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사천시 조례 제1227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사천시 조례 제1228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사천시 조례 제1229호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사천시 조례 제1230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9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8
- 사천시 규칙 제597호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421(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며,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

제2조 중 “지원사업” 을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 으로 하고, “법” 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 중 “이 회계” 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호 중 “폐치분합” 을 “폐지, 설치, 분리, 합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폐치·분합” 을 “폐지, 설치, 분리, 합병”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70명” 을 “872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55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6)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72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840				-			
	3급	1	1						
	4급	4	2	1	1				
	5급	47	22	2	6	3	1	7	6
	6급 이하	788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1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사 천 시 공 보

제421(7)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21(8)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사 천 시 공 보

제421(9)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향교, 서원, 서사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
6. 문화재관련 전통민속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421(13)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법」의 규정에 따라”를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
법」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를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5)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9조와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9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설립허가의 취소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귀속 조치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귀속 조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7.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기념품 및 관광(체험 포함)코스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7)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법인,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업
3.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브랜드 지원 사업
4. 사천시티투어 운영 지원 사업
5.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6.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7.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8. 관광기념품 개발 및 시 상징 공모사업 지원
9.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10.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 지원
11. 관광 사진촬영대회 및 전시 지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브랜드 공모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각종 대회유치 및 출전을 지원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위상 제고와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법인,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19)

제4조(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2. 전문체육·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활동의 지원
3. 시청 및 관내 학교의 운동경기부 지원
4. 학교체육활동·비영리 스포츠클럽 지원
5.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
6. 시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지원
7. 사천시체육회·사천시생활체육회 필요경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체육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확인,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2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
3.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 제2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21)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부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대상) 피해시점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으로서, 시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인명피해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명피해액 산정) 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말한다.

② 진료비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22)

제7조(인명피해 보상금지급)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해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대상)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농작물 등의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23)

제11조(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 ① 농작물 등의 피해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업의 피해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7월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이의신청) 피해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보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3. 그 밖에 피해보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공보

제421(25)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피해내역 (작물명, 면적)				
보상금지급 통지금액		원		
이의 신청사유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421(2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관내 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27)

제3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노사화합 관련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근로자 복지 증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노동단체 등 지원) 시장은 건전한 사천지역 노동단체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문화 활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2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29)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10.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3.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4. 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5.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마을어장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시설 설비 지원사업
9.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움, 국내·외 교육훈련 등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421(30)

10.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불량 농수산물의 시장 격리를 위한 지원 사업
11. 사천물(쇼핑몰)전자상거래,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2. 농수산물 직거래,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
13. 농수산물 규격출하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14. 농산물우수관리(GAP)활성화 지원사업
1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3항 중 “제7호” 를 “제9호”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농어촌 특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 행사 지원
8. 농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시장은 농어업·농어촌공동체 복원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해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87조” 를 “제88조” 로 한다.

제12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를 “에 따른다.” 로 한다.

제13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2)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3)

제5조(주관단체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9조(지도·검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의2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5명” 을 “13명”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5)

단,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5명, 시민사회 단체대표자 1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제6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한다.

제8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에 대하여는” 을 “에게는” 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수도사업소장” 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7)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구 경 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단 계 별 (m ³)	요 금 (원)		
가정용	1-20	670	13m/m	2,090
	21-30	970	20m/m	4,060
	31이상	1,240	25m/m	6,530
일반용	1-100	1,340	32m/m	11,610
	101-300	1,730	40m/m	19,580
	301이상	2,030	50m/m	30,030
			75m/m	72,830
대중탕용	1-500	1,230	100m/m	124,160
	501-1,000	1,680	150m/m	270,530
	1,001 이상	1,840	200m/m	393,130
			250m/m	530,240
전용공업용	m ³ 당	900	300m/m	639,47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의” 를 “시의” 로, “관하여” 를 “대하여” 로, “하수
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하수도법” 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를 “같은 법 시행령” 으로,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을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를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7조에 따
라”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39)

제3조제1항 중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 로 하고, “사천시
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 중 “기타의” 를 “그 밖의” 로 하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하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의 규정에 의거
” 를 “에 따라” 로 하며,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9조 중 “의 규정에 따른” 을 “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며, “의
한” 을 각각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의 규정에 의한” 을 “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 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에 따라”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0)

제1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의 규정에 따른”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타행위에 의해” 를 “타행위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하고,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를 “「지방세 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1)

제24조 제목 중 “(가산금 및 독촉)” 을 “(연체금 및 독촉)” 으로 하고,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를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연체금 = 미납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을 요율에 따라 징
수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2호가목, 제19조, 제2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 을 각각 “에 따라”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2)

[별표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8조제1항)							
설 치 자	법 인 명				성 별	남/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 별	남/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사천시 읍·면·동 번지(통 반)					
	관 중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검사일자 (. .)	보완 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 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사 천 시 공 보

제421(43)

[별표 2]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 종	구간(m ³)	요율(원)	비 고
가정용	1~20	267	
	21~30	315	
	31 이상	439	
일반용	1~100	345	
	101~300	504	
	301 이상	678	
대중탕용	1~500	294	
	501~1,000	400	
	1,001 이상	523	
산업용	m ³ 당	284	

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안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 급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사업·수예점·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m ² 미만의 소규모가게 ○신문보급소,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대중탕용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록된 사업장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를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를 “「지방공기업법」” 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2조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규정의 정하는 바에” 를 “규정에”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5)

제8조 중 “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 를 “시” 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 중 “수도법 기타” 를 “「수도법」 그 밖에” 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규칙에 의하여” 를 “규칙에 따라” 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천시” 를 “시” 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을 “각 호에 따른” 으로 하고,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이하” 를 “1 이하” 로 하며, “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사 천 시 공 보

제421(46)

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 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로 하며, “10분의8” 을 “10분의 8” 로 한다.

제17조 중 “수도법” 을 “「수도법」” 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9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계리상황” 을 “회계처리상황”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0조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21조 중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14조, 제15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7)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3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8)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9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21(49)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총합	본청	의 회	직속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계		사무국	기관					
총합계		872	483	17	121	53	22	101	75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840	480	17	92	53	22	101	75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2	1	1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2	1	1						
5급	소계	47	22	2	6	3	1	7	6	
	행정	8	5	2		1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50)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2			2					
6급	소계	226	137	3	27	14	5	28	12	
	행정	47	39	2		3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51)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공업	2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3	12			1				
	보건진료	10			10					
	행정+세무	10	7					1	2	
	행정+사회복지	14	7			2		4	1	
	행정+농업	8	1		1		2	4		
	행정+공업	3	3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	24	21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공업+환경	5	3			2				
	행정+공업+시설	7	7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52)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3	3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 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 수산+보건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53)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농업+수의+사 회복지	1						1		
	행정+농업+녹지+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 술+간호	2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식품위생	1	1							
	운전+방호+위생	2	2							
7급	소계	252	152	3	32	15	5	27	18	
	행정	48	34	2			1	8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3	1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10	2		8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4	12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54)

	기관별	총합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계								
	수의	1			1					
	보건진료	1			1					
	행정+세무	7	5				1	1		
	행정+사회복지	13	9			2			2	
	행정+전산	6	5			1				
	행정+농업	6	2		1		1	2		
	행정+공업	4	4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4	21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5	5							
	행정+공업+환경	7	4			3				
	행정+공업+시설	9	8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6	1				1		4	
	행정+농업+시설	4	4							
	행정+공업+방송통신	2	2							

사 천 시 공 보

제421(55)

	기관별 직렬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수의	1			1					
	보건진료	1			1					
	행정+세무	7	5				1	1		
	행정+사회복지	13	9			2			2	
	행정+전산	6	5			1				
	행정+농업	6	2		1		1	2		
	행정+공업	4	4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4	21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5	5							
	행정+공업+환경	7	4			3				
	행정+공업+시설	9	8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6	1				1		4	
	행정+농업+시설	4	4							
	행정+공업+방송통신	2	2							

사 천 시 공 보

제421(56)

	기관별 직렬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진산+공업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공업+시설+보건	1				1				
	식품위생	1	1							
	기계운영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사무운영	3				1		1	1	
8급	소계	205	112	4	19	12	11	23	24	
	행정	60	26	2		1	7	11	13	
	세무	3	2					1		
	사회복지	6	3				2		1	
	공업	2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57)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5	1		4					
	의료기술	5			5					
	간호	3			3					
	보건진료	1			1					
	환경	3	1			2				
	시설	17	15			2				
	행정+세무	8	5						3	
	행정+사회복지	11	9			1	1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7	4		1				2	
	행정+보건	2	2							
	보건+간호	2			2					
	행정+시설	16	12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공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58)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 건+환경	1							1	
	행정+녹지+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의 료기술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운전	5	4		1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05	54	4	7	9		16	15	
	행정	9	4					4	1	
	사회복지	20	5					4	11	
	공업	1	1							
	녹지	1	1							
	환경	1	1							
	시설	8	6					2		
	세무	1	1							
	보건	1			1					
	행정+세무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59)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5	5							
	행정+공업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기계운영	1	1							
	속기	2		2						
	운전	10	3	2	3	2				
	사무운영	11	7			2		1	1	
	전기운영	1				1				
	방호	4	1			1		2		
	위생	2	2							

사 천 시 공 보

제421(60)

	기관별	총합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계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1	1						
별정6 급상당	비서	1	1							

사 천 시 공 보

제421(61)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9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수도사업설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을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
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를 “「사천
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를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한다.” 를 “「사천시 지방공
기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